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0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박성연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
김춘곤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박영한, 박칠성, 서상열,
송경택, 신복자, 유정인,
윤기섭, 윤영희, 이민석,
이봉준, 이은림, 임춘대,
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
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된 사항과 「소방기본법」 등이 개편된 사항 등을 적시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방기본법」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, 「소방시설
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, 「소방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전부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소방기본법」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”를 “「소방시설
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
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한 조
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
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1항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
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”을
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
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
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
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에 따라”를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2조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방기본법」”을 “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”을 “법 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①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

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19조제2항”을 “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법 제19조제2항제6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제6호”로, “법 제2조제1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로,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법 제56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52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3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2.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화재경계지구의 지정)”을“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화재경계지구”를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)”을“(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13조제3항”을 “법 제

18조제3항”으로, “화재경계지구”를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로, “소방특별조사”를 “화재안전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3조제5항”을 “법 제18조제5항”으로, “화재경계지구”를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